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8
----------	-----

제출년월일 : 2001. 3. 1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행정규제개혁사무와 관련하여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채무보증서의 교부 조문개정 (안 제4조제1항)
- 나.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개정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관련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적용범위)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별지 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중 “채권자^인”을 “채권자 및 채무자^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p> <p>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p> <p>-----</p> <p>-----</p> <p>-----</p> <p>-----</p> <p>-----</p> <p>-----</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생략)</p> <p>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p>	<p>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현행과 같음)</p> <p>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상황 및 재정 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p>